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026
-----------	------

2012년 10월 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2년 10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개정('12.7.18 시행)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건설 용자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자로 확대하여 민영 주차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하였던 사항을 변경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명칭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함(안 제25조의2)
- 민영주차장의 설치비용 용자대상에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의 설치자를 포함하여 용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민영주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26조제1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함(안 별표 1 비고란 제3호)
-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3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따라 다른 주차수요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비고란 제4호)
-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향상을 위해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비고란 제10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 완료

○ 기 타

- (1) 입법예고(2012. 7.19 ~ 8. 8) 결과 : 제출의견 일부 반영
-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영배)

가. 관련법 변경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 동 조례개정안은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1)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2)와 “원동기장치자전거”3)를 추가하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영주차장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 도로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안 별표 1 비고란 제3호)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것임

※ 『주차장법』 제2조제5호 변경 사항

개정전	개정후('12.1.27)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나. 여행주차장 명칭변경 및 확장형 주차구획 우선설치에 대한 의견(안 제25조의2)

- 동 조례개정안은 여성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행주차장”의4)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에 따라 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2011년에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2)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3)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4)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의 줄임말

조문 정비를 통해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용어변경임

-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확장형 주차장⁵⁾을 설치하는 경우⁶⁾ 여성우선주차장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성우선주차장의 일부를 확장형 주차장에 우선설치토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여성우선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고, 여성 이외의 사람이 주차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동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다. 민영주차장 용자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안 제26조)

- 동 개정안은 민영주차장 설치시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용자대상에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설치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평면식 주차시설에 대한 용자확대를 통해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와 일부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지만

서울시는 4대문 주변지역·신촌 등 동 조례〔별표 1〕의 1급지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제한을 통해 승용차 이용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주차장 용자대상 확대가 도심지의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승용차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서울시의 주차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5) 확장형 주차장은 차량의 중·대형화로 인한 승·하차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 및 50대 이상 규모의 부설주차장에서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함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지원시⁷⁾ 1급지로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의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융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동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 주차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및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내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를 원하는 자의 민원 제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등의 방안 마련 검토도 필요함

라. 승용차공동이용 승용차의 주차요금 지원에 대한 의견(안 별표 1 비고란 제10호)

- 동 조례개정안은 시장방침에 따라⁸⁾ 추진하고자 하는 승용차공동이용(일명 car sharing)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근거 마련과 함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승용차공동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이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통해 승용차 이용억제와 함께 불필요한 승용차 보유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동 제도 도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⁹⁾
-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승용차공동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일명 “렌터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도의 승용차공동이용 정책이 기존에 일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7) 주차계획과-1481(2012.2.2)

8) 교통정책과-10671(2012.5.30), 자동차생활문화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승용차 공동이용(Car Sharing) 활성화 추진계획

9)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경우 '12년 2월 카셰어링을 도입하였고, 주차공간제공 및 무료이용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렌터카 업체들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변질되고(별첨 참고), 자동차 대여 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고지 확보수단으로 전략될 우려가 있음

또한 동 정책은 승용차 이용억제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신규 승용차 이용수요 창출 및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승객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2항에서는¹⁰⁾ 시장이 승용차 공동이용 등의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마. 주차요금 조정범위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안 별표 1 비고란 제4호)

- 동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경복궁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시간당 3,000원을 부과하던 관광버스 주차장(적선동 노외, 신문로 노외 및 열린마당)의 주차요금을 도시교통본부장 방침(주차계획과-6654, 2012.5.18.)에 따라 2,000원으로 인하하여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거를 사후에 치유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 따르면 관광버스 주차요금을 30%범위 내에서 감면하더라도 최소 2,100원 이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하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요금 조정 범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방침에 따라 일단 주차요금을 2,000원으로 인하한 후에 사후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인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10)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안은 [별표 2]와 [별표 3] 비고란의 제1호바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2009.7.8)을 반영하고, [별표 3] 비고란의 제6호에서 잘못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별표 3]의 비고란의 제6호에 되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2009년 서울특별시장의 의안번호 제674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잘못 반영되어 있던 내용으로 관련 부서의 안일한 조례 개정을 방증하는 것인 바, 조례 개정시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별첨]

렌터카와 승용차공동이용 비교

구 분	렌터카	서울시 승용차공동이용(카셰어링)	
		친환경교통과	교통정책과
이용조건	불특정 다수	회원등록제	좌 동
이용시간	일단위	분 또는 시간단위	”
이용방법	이용일 단위 예약	스마트폰 또는 무선통신카드	”
이 용 료	대여료(일) + 보험료(일) 연료비 별도	가입비(1회) + 월회비 (필요시) 대여료, 연료비, 보험료 (시간단위)	”
대여 및 반납	렌터카 사무실	공영주차장 등 생활주변 다수	”
운영방식	사무소 운영(유인)	무인대여 · 반납	”
차 종	다 양	기아차 레이 (전기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위주)
유 종	LPG	전 기	다 양
보 조 금	없 음	전기차 구입시 3,000만원 (국비 50% 매칭) (환경부 전기차보조금)	없 음
이용증대방안	없 음	없 음	서울시 홍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비 고			친환경교통과 카셰어링 통합관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6
----------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주차장법」 개정('12.7.18 시행)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건설 용자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자로 확대하여 민영 주차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하였던 사항을 변경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나.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명칭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함(안 제25조의2).
- 다. 민영주차장의 설치비용 용자대상에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의 설치자를 포함하여 용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민영주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26조제1항).

-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함(안 별표 1 비고란 제3호).
- 마.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3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따라 다른 주차수요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비고란 제4호).
- 바.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비고란 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7.19 ~ 8. 8) 결과 : 제출의견 일부 반영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제25조의2의 제목“(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바목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 바목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6호 중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별도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 울곡로, 종로, 난계로, 퇴계로, 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 이화여대길, 대흥로, 구 용산선철도, 양화로,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 도림로, 선유로, 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강남, 서초지역 :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분당수서로, 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로, 석촌호수로, 삼학사로, 잠실로, 올림픽로, 송파대로, 신천로, 오금로, 올림픽로, 위례성대로,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천호지역 : 올림픽로, 상암로, 양재대로, 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

하고 있는 대지

- (7) 청량리지역 :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8)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9) 미아지역 :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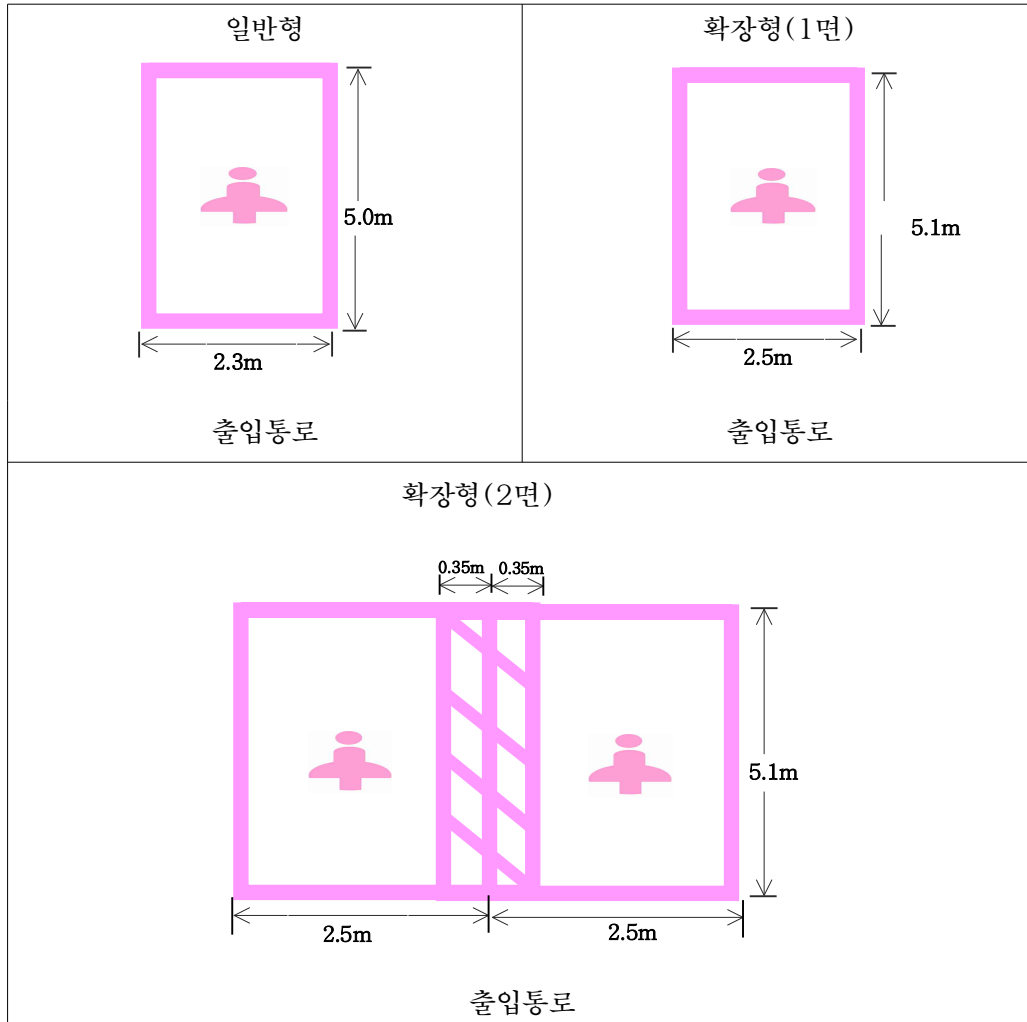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도 제3호 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실태조사 대상</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p> <p>2.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5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p>	<p>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 ----- ----- ----- ----- ----- ----- .</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p> <p>③ 여성우선주차장----- -----</p>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용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 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 3. (생략)

② ~ ⑤ (생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1. ~ 4. (현행과 같음)

④ **여성우선주차장**

제26조(용자의 대상) ①

1.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 울곡로, 왕산로, 난계로, 왕십리길, 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 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 대흥로, 용산선철도, 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경인로, 선유로, 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영동지역 : 반포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대로, 석촌호수길, 삼학사길, 잠실길,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신천동길, 오금로를 잇는 도로, 올림픽대로, 위례성길 및 백제교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천호지역 : 선사로, 상암길, 둔촌로, 성내동안길,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7) 청량리지역 : 제기로, 전농로, 배봉로, 하정로 및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8) 용산, 마포지역 : 강변북로, 마포로, 충정로, 의주로, 한강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9) 미아지역 : 도봉로, 오현길, 오패산길, 정릉길, 삼양로, 숲쟁길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 목동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2급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 2, 4, 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등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 울곡로, 종로, 난계로, 퇴계로, 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 이화여대길, 대흥로, 구용산선철도, 양화로,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 도림로, 선유로, 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강남, 서초지역 :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분당수서로, 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로, 석촌호수로, 삼학사로, 잠실로, 올림픽로, 송파대로, 신천로, 오금로, 올림픽로, 위례성대로, 백제교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천호지역 : 올림픽로, 상암로, 양재대로, 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7) 청량리지역 : 제기로, 전농로, 서울시립대로, 천호대로,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8) 용산, 마포지역 : 강변북로, 마포대로, 충정로, 통일로, 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9) 미아지역 : 도봉로, 오현로, 오패산로, 정릉로, 삼양로, 숲쟁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 목동서로, 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2급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 2, 4, 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등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와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와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1.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 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생략)
2. ~ 9 (생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1.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 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 설 물	최고한도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200㎡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534㎡당 1대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생략)
2. ~ 5. (생략)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 설 물	최고한도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200㎡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534㎡당 1대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당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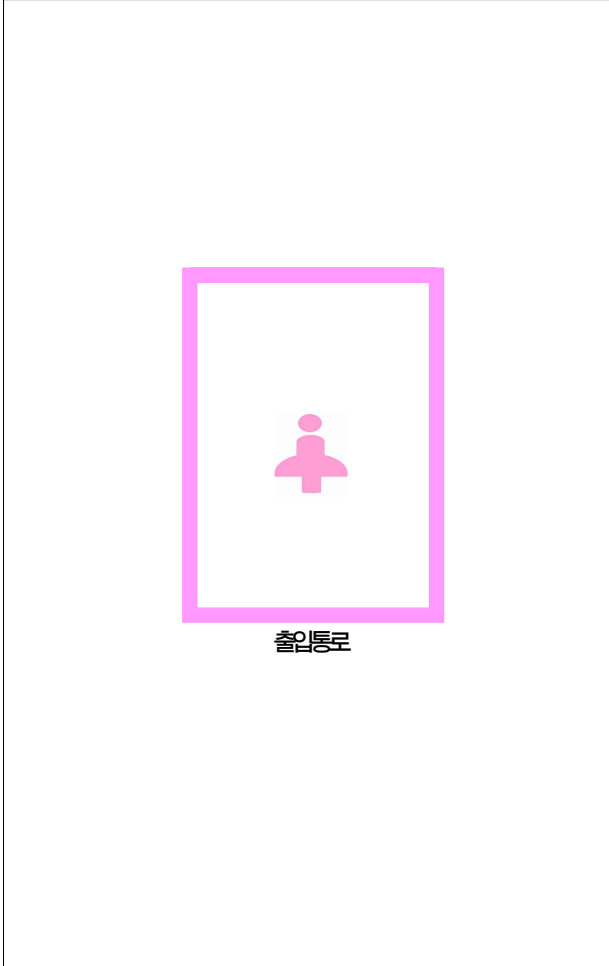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 11. (생략)
 <별도 제3호 서식>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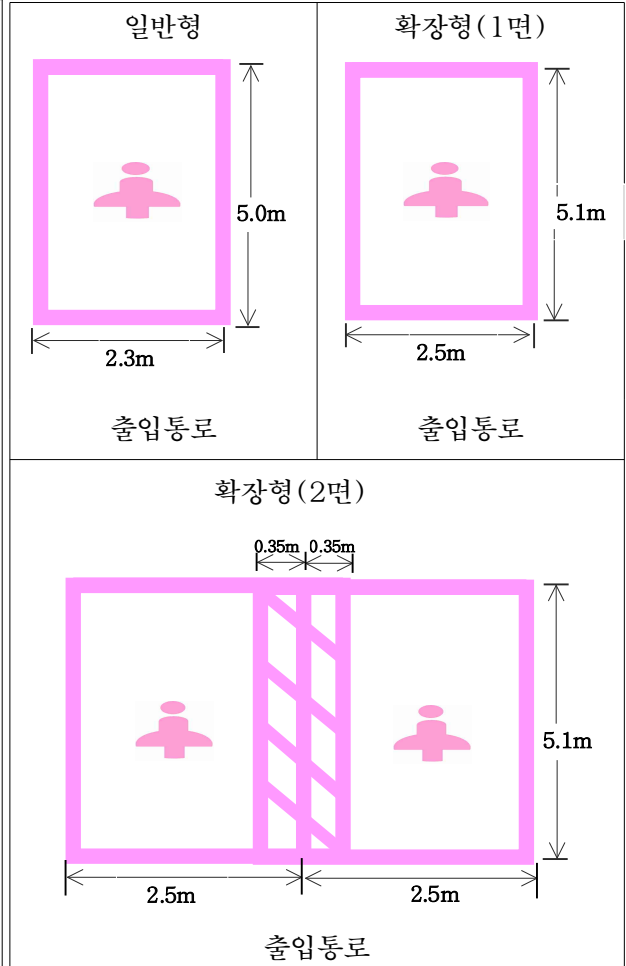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7. ~ 11. (생략)
 <별도 제3호 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강남구청 재무과 이주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비고 제3호 가목 1급지 중 (4)‘영동지역’을 ‘강남·서초지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지역은 1970년초 한강이남 개발 시 영등포의 동쪽지역이라고 영동(永東)으로 명명한 것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남·서초지역으로 개정 ○ [별표 1] 비고 제3호 가목 1급지 중 (4)영동지역 도로에 ‘양재대로·영동대로·내곡로를 추가하고, (6)천호지역의 도로 중 ‘양재대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대로는 강남·서초 안에 있는 도로이므로 천호지역에 넣은 것은 지리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삭제하여 강남·서초지역에 넣고, 서초와 강남외곽의 내곡로와 현재 영동대로도 추가로 넣는 것이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5일 고시된 현재의 ‘양재대로(서초구 우면동에서 강동구 고덕동까지 연장 17,160m 대로)’ 일부가 기존의 ‘둔촌로’이므로 삭제가 불가하고 - ‘영동대로’는 ‘영동지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없고, ‘내곡로’는 외곽지역이므로 1급지로 적절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2호

3. 미첨부 사유

- 『주차장법』 과 『도로명주소법』 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소규모 평면식 주차시설에 대한 용자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 주차계획과 박지향 (02-6321-4270)